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2191

제안년월일 : 2024년 12월 17일
제 안 자 : 교 통 위 원 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업계에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진입함에 따라 ‘민간자본’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권을 확보한 ‘민간자본’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본’에 대해 정의와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계법률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함

2. 주요골자

○ 동 개정조례안에서 ‘민간자본’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 투자기구 및 이에 준하는 금융자본’으로 규정하였으나 ‘금융자본’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광범위하고 법률 용어와 일치하도록 ‘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함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간자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을 말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민간자본'이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 투자기구 및 이에 준하는 금융자본 등을 말한다.	7. '민간자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③(생략)	제3조(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준공영제 버스운영에 민간자본이 진입하는 경우, 준공영제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감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4조제6항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민간자본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민간자본의 책무)
①~④ (생략)	①~④ (현행과 동일)	①~④ (현행과 동일)
<신 설>	⑤ 민간자본이 양수도 방식으로 시내버스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준공영제에 기반한 수입금공동관리 및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행기준 준수 및 노선관리 등 준공영제를 존중하고 재정건전화 및 버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⑥ 민간자본이 제7조에서 제9조의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	⑥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송원가 적용 및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도 신고와 별도로 경영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간자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준공영제 버스운영에 민간자본이 진입하는 경우, 준공영제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감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조제6항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업자의 책무)”를 “(사업자 및 민간자본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민간자본이 양수도 방식으로 시내버스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준공영제에 기반한 수입금공동관리 및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행기준 준수 및 노선관리 등 준공영제를 존중하고 재정건전화 및 버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민간자본이 제7조에서 제9조의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적용 및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도 신고와 별도로 경영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민간자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③(생략)	제3조(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준공영제 버스운영에 민간자본이 진입하는 경우, 준공영제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감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제4조제6항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민간자본의 책무)
①~④ (생략)	①~④ (현행과 동일)
<신 설>	⑤ 민간자본이 양수도 방식으로 시내버스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준공영제에 기반한 수입금공동관리 및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행기준 준수 및 노선관리 등 준공영제를 존중하고 재정건전화 및 버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민간자본이 제7조에서 제9조의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적용 및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도 신고와 별도로 경영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